

2022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 08. 26.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 2022. 08. .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1)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 액	비율(%)
세 입	534,514,864	451,016,558	83,498,306	18.51
세 출	109,086,918	60,995,944	48,090,974	78.84

3. 세입현황(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 액	비율(%)
계	534,514,864	451,016,558	83,498,306	18.51
기 획 예 산 과	248,943,614	221,024,457	27,919,157	12.63
재 무 과	143,760,202	92,001,373	51,758,829	56.26
주민공동체과	942,000	249,802	692,198	277.10
세 무 1 과	138,092,464	134,983,742	3,108,722	2.30
세 무 2 과	2,589,354	2,589,354	-	-
지 적 과	187,230	167,830	19,400	11.56

1)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세입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834억9,830만원(18.51%) 증액된 5,345억1,4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부서별 세입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세입 추가예산은 279억1,915만원(12.63%) 증액된 2,489억4,36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²⁾임.

2) 일반조정교부금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 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재무과** 세입 추가예산은 517억5,882만원(56.26%) 증액된 1,437억6,02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³⁾ 517억5,882만원임.

○ **주민공동체과** 세입 추가예산은 6억9,219만원(277.10%) 증액된 9억4,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202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후 정산 잔액 3,429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마을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1,845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마을기업 육성,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2,675만원,
- 국고보조금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574만원과 시비보조금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1억4,221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후 정산잔액 368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후 정산잔액 6,105만원임.

3) ■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1.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2.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 + 보조금 집행잔액)

■ 세계잉여금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두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 **세무1과** 세입 추가예산은 31억872만원(2.30%) 증액된 1,380억9,24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30억2,039만원과 국고보조금 8,075만원, 국고보조금 2021회계연도 미사용잔액 757만원임.
- **세무2과** 세입 추가예산은 없으며,
- **지적과** 세입 추가예산은 1,940만원(11.56%) 증액된 1억8,72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⁴⁾로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관리비 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1,040만원임.

4)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지자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한다. 특별교부세 액은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로 한다. 교부세는 연(年) 4기로 나누어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교부한다.

4. 세출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 액	비율(%)
계	109,086,918	60,995,944	48,090,974	78.84
기 획 예 산 과	103,915,802	57,074,816	46,840,986	82.07
재 무 과	564,502	564,502	-	-
주민공동체과	2,882,286	1,740,433	1,141,853	65.61
세 무 1 과	753,994	665,393	88,601	13.32
세 무 2 과	606,317	606,317	-	-
지 적 과	364,017	344,483	19,534	5.67

■ 세출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세출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80억9,097만원(78.84%) 증액된 1,090억8,6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예산은 468억4,098만원(82.07%) 증액된 1,039억1,5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9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⁵⁾로 118억7,0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⁶⁾ 전출금으로 1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⁷⁾ 전출금으로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5.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7조(설치 및 운용)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무과 세출 추가 예산은 없으며,

○ 주민공동체과 세출 추가예산은 11억4,185만원(65.61%) 증액된 28억8,22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성립전 예산⁸⁾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3,000만원(국비 75%, 시비 25%)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46만원(국비 75%, 시비 25%)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501만원(국·시·구비)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640만원(국비 70%, 시비 30%)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8) 성립전 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임.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 사용이 가능함.

■ 성립전 예산 절차

- 사업부서 : 보조금(기타보조금), 기타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비예산 확정 문서, 사업계획서, 성립전 예산 신청서 (세입 및 세출예산서-해당 지원사업 부분만)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 (총무팀, 회계팀 등) 제출
- 회계(예산)담당부서 : 예산과목과 사업비 적정여부 검토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예산집행
- 성립전 예산 사용후 조치 (사업부서) :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함.
(이때 사업명 뒤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000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공정무역 자치구 지원사업 1,650만원(시비)
-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8,000만원(시비)
- 정릉동 508단지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⁹⁾으로 4억원(구비)
-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840만원(시비)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3,000만원(시비)
- 국고보조금 반환금 934만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3,172만원임.

○ **세무1과** 세출 추가예산은 8,860만원(13.32%) 증액된 7억5,39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주택가격조사결정 일반운영비 8,075만원(국비)
- 국고보조금 반환금 785만원(주택가격 조사결정)

○ **세무2과** 세출 추가예산은 없으며,

○ **지적과** 세출 추가예산은 1,953만원(5.67%) 증액된 3억6,401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관리 900만원(특별교부세)
- 공정한 부동산거래 관리 중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1,040만원(시비)

5. 검토결과

-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획재정국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9) 총사업비 : 19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억4,200만원, 구비 8억800만원)